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1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김소희

김석기 • 권영세 • 이헌승

주호영 · 엄태영 · 이달희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민과 임업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 등 물류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불완전 면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영세 운송업체와 무자료 거래를 해 오고 있어 그 부작용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현실적으로 농수산물·임산물의 운송용역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최근의 농산물 물류지원금 폐지 등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임업인의 물류 관련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아울러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무자료 운송업자와의 거래가 성행함으로써 운송물 파손, 분실, 도난과 운송시간 지연 등에 따른 손실을 산지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정책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농정계획·집행에서의 비효율도 커지고 있음. 그리고 이는 선진 물류업체의 산지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고도화'와 '스마트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임업용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임산물 운송용역에도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운송비의 감소로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며 청년농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최근 심각해져 가는 지방소멸과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그리고 물류 표준화와 정보화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성장산 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설비와 운송 노하우를 갖춘 전문 운 송업체의 운송시장 진출, 농산물 신선도 유지, 포장 개선과 오염원 차 단 등도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무자료 거래의 퇴출로 농가 등의 거래 규모와 운송 품목 등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어, 품목별·규모별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자료 거래의 세원(稅源) 노출에 따라 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산지 운송업체 간 과세형평성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호에 따른 농민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 및임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이들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과 제6호에 따른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이들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용)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 제3호, 제3호 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2 및 제7호-----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5호에 따른 농민이나 임업 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한 농 산물 및 임산물의 출하를 위 하여 이들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 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 합법」 또는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과 제6호에 따른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출하를 위하여 이들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운송용역으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